

### 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·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제183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-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을 규정함(안 제2조)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에서는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여론수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해제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도록 함(안 제5조)

## 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·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(이하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”이라 한다)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정기준 및 대상)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

1. 청소년 통행금지구역

- 가.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
- 나.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2. 청소년통행제한구역

- 가.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
- 나. 청소년 유해매체물, 약물 등의 판매·대여·유통·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
- 다. 관할 지역의 주민 1,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

제3조(통행금지 및 제한시간)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.

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한다. 다만, 부모 및 친권자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지정절차)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,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,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정해제)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6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)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.

제7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) ①해당구역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협조체제 유지)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·학교·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